

# 보 고 사 항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보고

- 위원장 정 해 봉 의원
- 간 사 박 운 수 의원
- 위 원 (10명)

박 병 옥 부의장	문 팔 갑 의원	김 성 인 의원	문 정 조 의원
조 영 길 의원	남 은 기 의원	민 용 기 의원	안 복 수 의원
문 현 근 의원	정 중 구 의원		

## □ 각종의안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8. 7. 24 의원발의
  - 심사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98. 7. 30)
-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8. 7. 24 의원발의
  - 심사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98. 7. 30)
-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98. 7. 23 군수제출
  - 심사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결과 : 수정가결 ('98. 7. 31)

## □ 의안제출 현황 보고

○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8. 7. 27 의원발의

○ 발의자 : 김성인 의원외 5인

○ 주 분

- 6.25 당시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중 양민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코자 다음과같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98. 8. 1 (土) ~ 10. 31 (土) (92일간)

- 구성인원 : 6 명

○ 제안이유

- 6.25 당시 국군이 공비 토벌작전을 수행중 양민들을 집단학살한 사건에 대하여 학살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고 이어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과 피해 유족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왜곡된 역사를 세우기 위하여 국회, 정부등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본건을 발의 함.

## □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1.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기타 일반 안건